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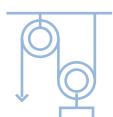
# 연구윤리 위반사례집 +FAQ



**GIST**



# 연구윤리 위반사례집 +FAQ



**GIST**

# 연구관련 부정행위 신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제보해주십시오.



## 신고방법

신고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단, 익명신고의 경우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경우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의 경우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제보자의 권리보호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및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 실성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신고센터 연락처



062-715-2936



rndsos@gist.ac.kr

# 연구윤리 위반사례집 +FAQ

## CONTENTS

<b>제1장</b> <b>연구윤리와</b> <b>연구부정행위</b>	1.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2.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3. 연구자와 기관의 역할 및 책임	08 09 10
<b>제2장</b> <b>연구윤리</b> <b>위반 사례</b>	1. 위조/변조 2. 표절 3. 부당한 저자표시 4. 부당한 중복게재 5. 부실 학술 활동	14 21 32 46 62
<b>제3장</b> <b>연구윤리</b> <b>확보를 위한 노력</b>	1. 연구윤리 교육 2. 예방가이드라인 3. 논문 표절방지 프로그램 4.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70 71 73 76
<b>제4장</b> <b>참고문헌</b>	참고문헌	78



# 제 1 장

##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



# 1

##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부정행위의 범위)

• **위조**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 **표절**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 부당한 저자 표시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 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각 연구부정행위 유형의 상세 내용은 사례 파트 참조

# 2

##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GIST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절차



# 3

## 연구자와 기관의 역할 및 책임

###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등), 제7조(광주과기원의 역할과 책임 등)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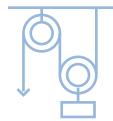
-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⑨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⑩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 ⑪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등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호 책무 및 실제 위험 발생 시 적극 대처하고 보호할 의무

---

## **기관의 역할과 책임**

기관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기관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자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2장

# 연구윤리 위반사례



# 1

## 위조/변조

### 연구부정행위로서의 위조/변조

위조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함.

변조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함.

### 위조/변조 사례

#### 사례1 | 필트다운인 화석 사기사건

한국연구재단, 2011.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영국의 변호사 찰스 도슨(Chales Dawson)은 1911년 필트다운 지방에서 유인원에서 인류로 넘어오는 중간 단계의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과 턱뼈를 발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이른바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라 불린 인류 진화 과정의 수수께끼를 푼 것으로 찬사를 받았고 그 화석은 발견자의 이름을 따 '에오ант로푸스 도스니(Eoanthropus Dawsoni)' 혹은 '필트다운인'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 화석에 의문을 품은 학자들에 의한 검증 결과 비교적 오래된 인류 조상의 두개골에 오랑우탄의 뼈를 가공한 턱뼈를 붙이고 조작한 가짜임이 1953년에서야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 사례2 | 골상학과 관련된 논란들

한국연구재단, 2011.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18세기 독일 의사인 프란츠 갈(Franz Joseph Gall)은 두뇌의 형태와 뇌 진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두상의 차이는 두뇌 형태의 차이에 원인이 있고 두뇌의 여러 부분은 각기 다른 인간 능력의 기관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틀리지 않은 가설이었으나 같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람의 두상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적 능력과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학설은 후날 '골상학(Phrenology)'로 불리게 되었다. 골상학의 주장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나아갔다. 미국 의사 조지모턴(George Morton)은 몽골족이나 인디언, 흑인의 두뇌 평균 용량이 백인보다 훨씬 더 작다고 주

장하였으며 프랑스의 폴 브로카(Paul Broca)는 남성에 비해 적은 여성의 뇌 용량을 정신적 열등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

### 사례3 | 리센코의 유전학설

한국연구재단, 2011.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리센코(Lysenko)는 구 소련의 생물학자로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이 유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당대의 유전학 이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었으나 리센코는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전통 이론을 부르조아 학설로 규정하고 자신의 이론을 변증법적 유물론과 결부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리센코는 겨울에 파종하는 밀의 종자에 습기를 제공한 다음 차게 보관하면 봄에 파종하여 수확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구현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소련의 농업위기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스탈린과 흐루시초프 사망 이후 실각한 리센코의 업적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실시되었고 리센코가 교배를 통해 개량하였다고 발표한 젖소의 우유 유지방수치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밝혀졌다.

---

### 사례4 | 의도적인 연구결과 조작

한국연구재단, 2021. 국내·외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례집

교수K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를 받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를 수행하며 논문 14편을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교수K가 수저자 및 공동저자로 10개 저널에 게재한 14편의 논문은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위조와 변조를 했다. 이미 게재한 논문의 그림을 재사용하거나 없는 사실을 조작해 게재했다. 제보자는 교수K의 대학원생으로, 상세한 증거까지 제출할 정도로 해당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교수K는 논문을 고의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게 아니라 논문 편집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였다며 연구노트와 원자료를 분실해 일어난 실수가 많았고 조작이 의심되는 논문의 일부는 학생들이 실험한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모든 논문의 최종 편집자는 교수였으며 논문 조작도 대부분 교수K가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돼 논문 14편에 대해 위조 및 변조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내렸다. 그뿐 아니라 예비조사와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하여 연구부정행위의 하나인 조사방해행위도 저질렀다. 자신이 저지른 위조와 변조를 특정인에게 전가하거나 변조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해외의 논문 철회 사이트 ‘RetractionWatch’에도 교수K의 논문 철회 사실이 게시되었다. 소속 대학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통보해 상황을 공유했다. 조치 결과, 대학은 연구 조작을 주도한 교수K를 해임했다. 해당 학회와 관련 학회의 학술지는 교수의 논문을 모두 철회했다. 연구비 지원기관은 연구 참여제한 5년과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연구비 환수를 결정했다.

### 위조·변조의 예

저자는 이미 출판된 논문의 이미지 일부를 새롭게 투고하는 논문의 이미지에 편집하거나(위조 또는 변조) 일부 데이터를 부풀리는 것(변조)으로 위조와 변조를 하여 논문을 출판했다. 논문 14편 모두 위조와 변조를 통해 연구결과를 조작했다.

위조의 예	Original data				Fabrication of data at 1 and 3 hours →	Data published				
	Repetitions	Measured values				Repetitions	Measured values			
		1 hour	3 hour	5 hour			1 hour	3 hour	5 hour	
#1	Not measured	Not measured	17		#1	4	10	17		
#2	Not measured	Not measured	20		#2	6	11	20		

출처: Hwang Eun Seong et al., (2016), Manual for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in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Seoul, Korea, p.25.

변조의 예	Original data				Fabrication of data at 1 and 3 hours →	Data published				
	Repetitions	Measured values				Repetitions	Measured values			
		1 hour	3 hour	5 hour			1 hour	3 hour	5 hour	
#1	5	3	17		#1	5	10	17		
#2	7	2	20		#2	7	11	20		

출처: Hwang Eun Seong et al., (2016), Manual for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in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Seoul, Korea, p.26.

## 왜 조사방해인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를 보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외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이하 조사방해)'가 포함돼 있다. 조사방해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 조사위원을 알아내어 연락하는 행위, 거짓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저자는 제보가 접수되자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대학원생들을 면담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논문 조작을 했다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사위원회에 변조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했으며, 연구노트나 연구결과 등의 자료를 분실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이며, 이에 대해서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내렸다.

## 이 사례의 교훈

세계적으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위조·변조·표절은 공통적으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정한다. 저자는 14편의 논문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많은 연구자들이 의도했던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미약하면 데이터를 조작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조작된 논문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특히 다른 연구자들이 그 논문을 재현하면서 드러나거나 제보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결과가 탄탄한 증거 위에서 좀 더 확고(robust)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조작된 연구결과에 기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구자는 원데이터를 제대로 기록하고 보관하고 활용하여 원데이터에 충실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공동연구를 할 경우에도 위조나 변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연구뿐 아니라 타인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위조/변조 FAQ

한국연구재단, 2025.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학술지 논문의 연구결과에 대한 위·변조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자료 검증에서 위조와 변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조와  
변조의  
차이

위조는 실험을 하지 않고도 실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실험하지 않은 샘플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거나, 설문조사 응답을 조작하여 응답하지 않은 사람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변조는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조작하여 실험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여 결과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으로서 데이터 값을 조작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드는 경우, 그래프나 차트를 임의로 수정하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구 데이터의 위조 및 변조는 연구의 신뢰성을 해치고, 과학적 진보를 방해하여,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와 변조를 구분하고 판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1) 연구노트를 통해 기록의 일관성 확인 (2) 실험 원자료(raw data)를 통해 제출된 연구 결과와 원자료를 비교하여 비정상적인 패턴이나 데이터 변경 사항 확인 (3) 데이터 분석 기록 제출을 통한 데이터 분석 과정과 사용된 알고리즘 또는 소프트웨어 로그를 검토하여 위·변조 여부 확인 (4) 그래프 및 이미지의 포렌식이나 원본 이미지와 제출된 이미지 비교를 통한 위·변조 확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조사자 및 공동연구자의 소명이나 진술 등을 통해 연구과정과 데이터를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공학 분야 연구 과정에서 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특정 실험 조건에서 10회 반복 측정하였고, 획득한 실험 데이터 10개에서 2개의 측정값이 예상에서 벗어나 그 데이터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의 실험 결과를 평균하여 논문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처리법은 연구윤리에 위반되나요?**

**A**

연구윤리 위반 예부

실험이나 조사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 수치가 나왔을 때, 연구자가 그 일부만을 주관적으로 취사선택하여 결과를 분석한 후 나머지를 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데이터 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측정 데이터값 10개를 얻은 경우, 2개의 측정 데이터가 예상에서 벗어난다고 하여 그 2개 데이터를 배제하고 8개 데이터만 표시하는 것은 ‘데이터 조작(변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험에서 연구자가 종종 접하는 어려움은 다른 수치와 패턴이 상이한 측정값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값들은 보통 이상치(outli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측정 횟수를 늘려 반복 측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상치가 1) 계통 오차(systematic error) 또는 실행 오류(deterministic origin)에 기인한 문제인지, 아니면 2) 고유의 내적인 변동성에 기인한 우발 오차(random error)인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 수치들을 제외하여 분석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측정 횟수와 이상치를 통계 분석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 이러한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기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데이터 오류 발견 시 후속 조치

이·공학 분야 연구자입니다. 이전에 출판한 논문의 데이터 일부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지만 해당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데이터의 위치 및 변조 등 의도된 조작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학술지 발표 논문의 일부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알려서 수정(correction) 또는 철회(retraction)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논문의 수정은 논문 전체의 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적인 계산, 통계 분석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 실험 과정에서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저자자격이 있는 사람이 목록에 빠져 저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논문 전체에서 일부의 문장이 표절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서 논문을 수정하는 절차이며, 이는 단지 논문 저자의 실수에 기인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학술지에서 수정된 해당 논문은 원래 논문에 대한 링크를 첨부하

여 출판하게 되며 이를 통해 독자는 논문에서 어떠한 부분이 수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논문 철회란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조나 변조와 같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계산이나 실험상의 실수로 인해 논문에서 제시된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연구가 비윤리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은 논문을 철회해야 합니다. 논문 철회는 논문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가장 마지막으로 취해지는 행위로서 오랜 시간을 거쳐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학술지 편집자에게 수정 또는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논문을 간략히 소개(제목, 저자, DOI, 저널 게재 쪽)하고, 발표한 논문의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를 알리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 혹은 철회 사유를 기술하면 됩니다. 그러면 편집자의 판단하에 수정 혹은 철회가 결정됩니다.

# 2

○ ● 표절 ○ ○ ○

## 표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연구윤리사례집

### 연구부정행위로서의 표절

표절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표절 판단 기준

- 1** 타인(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및 분석 체계, 표현(고유한 용어, 어구나 문장, 데이터, 그림, 사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는 경우  
공식 출판된 것이든 공식 출판되지 않은 것이든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 2** 외국 문헌을 인용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내의 다른 저자에 의해 이미 1차 인용된 내용을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원전을 본 것처럼 한 경우(2차문헌 표절)  
외국 문헌을 그대로 옮기거나 paraphrasing 또는 요약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 출처 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하면서도 그중 일부에만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부분에는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표절 유형 -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유형 1**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사고 구조(생각의 프레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활용하는 경우

- 실험연구의 경우, 타인의 방법론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 주제를 해결하는 원저자의 독특한 사고나 논리 전개의 틀을 그대로 도입하여 기계적으로 자신의 연구 주제를 끼워 맞춘 것
  -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표현은 같지 않지만, 서술의 체계와 패러다임이 닮은 경우
- 

**유형 2**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용어), 어휘(구), 문장, 단락, 그림, 표, 사진, 데이터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

- 교과서나 교재 등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나 정형화된 담론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이 기술하고 정리한 것을 활용하였다면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
- 

**유형 3** 타인이 쓴 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저자가 말 바꿔쓰기(paraphrasing) 또는 요약(summarizing)했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유형 4** 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유형 5**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 한 사람의 여러 저작물이나 여러 타인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 발췌 및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다만, 발췌 · 조합에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표절 유형 - 출처를 표시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유형 1**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했지만 직접 인용하면서도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

**유형 2** 저자가 외국인이 쓴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그대로 번역하거나 말 바꿔쓰기 또는 요약을 하지 않고 2차 문헌에 인용된 내용을 그대로 쓸 때,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을 출처 표시 한 경우

---

**유형 3** 인용한 것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본문에는 출처를 표시했지만 참고문헌에는 누락한 경우
- 활용한 저작물을 참고문헌에는 표시했지만 본문에는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본문에서 인용한 내용이 타인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면서도 참조라고 표시하는 경우

---

**유형 4** 부분적/한정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활용한 타인의 동일 저작물 여기저기서 가져온 부분이나 타인의 다른 저작물 여기저기서 가져온 부분 모두에 대해 출처 표시를 해야 하는데 어느 일부분에만 하는 경우

---

**유형 5**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상당히 많은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혹은 간접 인용을 하면서도 해당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머리말 등에서 두리뭉실하게 활용하였음을 밝히는 경우

---

**유형 5** 인용된 부분에 출처를 표시했지만 본인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아이디어나 어구 및 문장을 가져온 경우

- 즉, 자신의 저작물에서 타인의 것이 주가 되고 자신의 것이 종적인 것에 해당되는 경우

## 표절 의심 사례 -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사례1 | 유형 1 위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연구윤리사례집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활용한 분석 모형(방법론)에 대한 설명의 일부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마치 자신의 설명인 것처럼 하고 있음.

#### 표절 의심 부분

사회이동표 분석은 사회이동 연구에서 사회이동표에 대수선형 및 연관모형을 적용하여 다양한 위상 학적(tropolological) 모형의 비교를 통해서 출신 계층과 도달 계층 간 관계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박병영 외, 2009). 사회이동표 분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모형은 본인의 초직과 본인의 이후 직업 간에 아무런 구조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동의 기회는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 는 독립모형(independence model) 혹은 완전이동모형(model of perfect mobility)이다.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log F_{ij} = a_0 + a_{1i} + a_{2j} \quad (1)$$

이때  $F_{ij}$ 는 기대도수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가리키고, 는 각각 전체 평균효과, 행과 열의 직접효과를 가리킨다. 이러한 행과 열의 효과는 사회구조적 변동에 의해 직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구조적 이동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독립모형은 현실 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래에서 도입되는 다양한 모형과의 비교 기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아래의 모형이 이 비현실적 독립모형에 비해서 현실에서 보이는 이동의 양상을 얼마나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독립모형에서 출발해서 대각선에 지위 유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일양적 계급 유지모형(uniform inheritance)(모형2) 및 유사독립 혹은 유사완전이동모형(quasi-independence 혹은 quasi-perfect mobility model)(모형3)이 도출된다. 이들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log F_{ij} = a_0 + a_{1i} + a_{2j} + I \quad (2) \quad \log F_{ij} = a_0 + a_{1i} + a_{2j} + I_i = j \quad (3)$$

여기에서  $I$  혹은  $I_i = j$ 는 각기 주 대각선에 해당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직업이 일치하는 세습이 다른 이동의 경우에 비해 얼마나 확률이 높은가를 나타낸다. 일양적 세습모형과 유사완전이동모형의 차이는 전자가 모든 계급적 지위에서 세습의 정도 혹은 확률이 동일하다고 보는 데 반해서 후자는 계급적 지위별로

세습의 정도 혹은 확률이 차이를 보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들 모형은 모두 주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에 해당하는 경우의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동표 분석에서는 독립모형, 일양적 세습모형, 유사완전이동모형을 적용한다. 물론 사회이동표에

대해 다양한 대수선형모형의 적용이 가능하며, 출발 지위와 도달 지위 간의 관계에 대한 행렬 설계를 통해 세대내 이동을 재현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는 방식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모형의 해석 가능성이나 성별 비교를 위해 동일한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기초적인 보고가 목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 가지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1. 분석 모형

사회이동 연구에서 이동표에 대수선형 및 연관모형을 적용하는 연구 방법의 장점은 다양한 위상학적(tropolological) 모형의 비교를 통해서 출신계층과 도달계층 간 관계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이동표 분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모형은 부모와 자녀의 계급적 지위 간에 아무런 구조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동의 기회는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는 독립모형(independence model) 혹은 완전이동모형(model of perfect mobility)이다.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log F_{ij} = a_0 + a_{1i} + a_{2j} \quad (1)$$

이때  $F_{ij}$ 는 기대도수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가리키고, 는 각각 전체 평균효과, 행과 열의 직접효과를 가리킨다. 이러한 행과 열의 효과는 사회구조적 변동에 의해 직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구조적 이동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독립모형은 현실 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래에서 도입되는 다양한 모형과의 비교의 기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아래의 모형이 이 비 현실적 독립모형에 비해서 현실에서 보이는 이동의 양상을 얼마나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독립모형에서 출발해서 대각선에 세습의 정도를 나타내는 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일양적 세습(uniform inheritance)(모형2) 및 유사독립 혹은 유사완전이동모형(quasi-independence 혹은 quasi-perfect mobility model)(모형3)이 도출된다. 이들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log F_{ij} = a_0 + a_{1i} + a_{2j} + I \quad (2) \quad \log F_{ij} = a_0 + a_{1i} + a_{2j} + I_i = _j \quad (3)$$

여기에서  $I$  혹은  $I_i = _j$ 는 각기 주대각선에 해당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직업이 일치하는 세습이 다른 이동의 경우에 비해 얼마나 확률이 높은가를 나타낸다.

일양적 세습모형과 유사완전이동모형의 차이는 전자가 모든 계급적 지위에서 세습의 정도 혹은 확률이 동일하다고 보는데 반해서 후자는 계급적 지위별로 세습의 정도 혹은 확률이 차이를 보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들 모형은 모두 주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에 해당하는 경우의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6장의 이동표 분석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모형, 즉 이원이동표 분석에서는 독립모형, 일양적 세습모

형, 유사완전이동모형을, 응답자 교육수준을 포함한 합원이동표 분석에서는 주효과 모형, 조건부 독립모형, 조건부 유사완전이동모형, 조건부 교육수준별 유사완전이동모형을 적용한다. 물론 사회이동표에 대해 다양한 대수선험모형의 적용이 가능하며, 계급 간 관계에 대한 행렬 설계를 통해 계급 간 이동을 재현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는 방식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모형의 해석 가능성이나 성별 비교를 위해 동일한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기초적인 보고가 목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6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모형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 해석 및 시사점

연구자는 다른 주제를 연구하더라도 동일한 분석 모형을 활용할 수도 있음. 그렇지만 분석 모형의 이론적 근거나 주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느냐는 연구자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신의 연구 문제에 대한 분석 모형을 설명할 때 동일한 모형을 활용한 타인의 설명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왜냐하면 같은 분석 모형이라고 할지라도 사용하는 목적이나 중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설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임. 타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쓸 때는 타인의 독특한 설명 방식에 대한 존중의 표시와 자신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출처 표시를 해야 함.

## 사례2 | 유형 2 위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연구윤리사례집

평가 대상 보고서는 △△△△△의 “…………”의 개조식으로 된 여러 단락을 풀어서 거의 원문 그대로 차용하였으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

### 표절 의심 부분

일본 u-health 서비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선진 기업들의 참여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고령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u-health 서비스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도 u-health서비스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일본 후지경제사(2008 건강관리 시스템 시장의 향후 전망, 2008.11.5)는 일본의 IT 및 전자기술을 응용한 차세대 헬스케어 관리 시장규모는 2007년 1,890억 엔에서 2015년에는 약 4.6배 성장한 8,249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나. 일본

- 일본의 u-Healthcare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선진 기업들의 참여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
- 일본 정부는 1989년부터 Golden Plan을 실시하여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 복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으로써 재택 서비스 및 의료복지 시스템을 개발 및 수행해 왔으며, 현재 3차 건강증진사업으로 2000년부터 '일본 건강 21'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 후지경제 社가 발표(2008.11.5)한 「2008 건강관리 시장의 향후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IT 및 전자기술을 응용한 차세대 헬스케어 관리 시장규모는 2007년 1,809억엔에서 2015년에는 약 4.6배 성장한 8,249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sup>19)</sup>

## 해석 및 시사점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글(용어, 어구, 문장, 단락)을 자신의 저작물속에서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하여 활용할 때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출처를 표시해야 함.

## 사례3 | 유형 2 위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연구윤리사례집

평가 대상 보고서는 표, 사진, 그림, 데이터 등을 그대로 차용하였으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

### 표절 의심 부분

그림 3-5. 공동 오프셋을 통한 간접연계: 완전가격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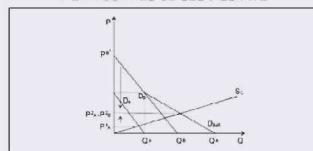


그림 3-6. 공동 오프셋을 통한 간접연계: 불완전가격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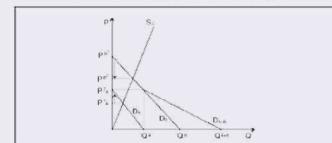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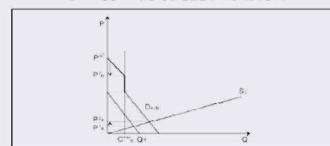


그림 3-7. 공동 오프셋을 통한 간접연계: 사용제한규정 시



##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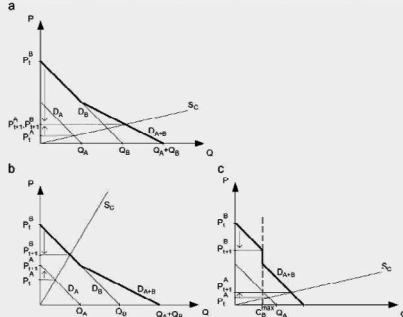


Fig. 3. Price convergence when cap-and-trade systems are linked indirectly via credits.  $D_A$  and  $D_B$  are credit demand curves for systems A and B, and  $D_{A+B}$  is the aggregate demand curve for the two systems. The initial price levels in systems A and B are  $P_A^0$  and  $P_B^0$ , respectively. The initial equilibrium in system A is at  $(Q_A^0, P_A^0)$  and in system B is at  $(Q_B^0, P_B^0)$ . The initial equilibrium in the credit market is at  $(Q_A^0 + Q_B^0, P_A^0 + P_B^0)$ . The entry of system B into the credit market shifts the aggregate demand curve rightward to  $D_{A+B}$ . The new equilibrium in system A is at  $(Q_A^1, P_A^1)$  and in system B is at  $(Q_B^1, P_B^1)$ . The final equilibrium in system A is at  $(Q_A^B, P_A^B)$  and in system B is at  $(Q_B^B, P_B^B)$ . The arrows indicate the direction of price changes resulting from indirect linking.

## 해석 및 시사점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표현, 표, 사진, 그림, 데이터 등을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함. 타인의 저작물을 속에 있는 표나 그림 등을 자신의 논지 전개나 결과를 위해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그것을 저자 자신이 직접 산출했다고 독자를 속이는 경우에 해당됨.

## 사례4 | 유형 4 위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연구윤리사례집

아래의 평가대상 보고서는 외국어로 된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고 있음.

## 표절 의심 부분

상향식 연계들의 합은 다자간 협정에 대한 협상의 자연스러운 시작점이 되어 제도적 역량(capacity)을 강화하고 장기에는 포괄적인 하향식 협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양자간 연계협상의 경험들은 글로벌 협상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계들은 현상황적(status quo)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며 미래의 다자간 협정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A second possibility is that a collection of bottom-up linkages might serve as a natural starting point in negotiations leading to a top-down agreement. An existing system of linkages may help to develop the experience and mutual trust necessary for global negotiations to succeed. Furthermore, as we discuss below, any future agreement is likely to be heavily influenced by the status quo system of existing linkages and institutional investments.

### 해석 및 시사점

자신의 저작물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한 후, 말 바꿔 쓰거나 요약한 경우,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자신의 저작물 속에 타인의 아이디어나 표현을 그대로 또는 말 바꿔 쓰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표절에 해당됨. 통상 연구자들은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쓰지 않고 바꿔 쓰면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옳지 않음.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표현이나 분석이 타인의 어떤 아이디어 및 표현으로부터 왔는지를 비교, 구분할 수 있게 해 줌.

## 표절 FAQ

한국연구재단, 2025.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저는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제가 작성한 것처럼 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다만 실수로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표절이 아니거나 표절이더라도 비난가능성은 매우 적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인용표시의  
복제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저술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부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표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인용하려는 노력은 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정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A는 표절이 문제가 되는 부분 중 저서를 인용한 부분과 관련하여, 인용 저서의 저자인 B가 사전 또는 사후 동의를 한 이상 표절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타당한가요?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

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연구부정행위의 피해자는 논문 원저자, 출판사, 학회, 소속기관 등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당사자의 양해나 승낙은 공공의 신뢰를 위반한 부정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보면, C 출판사의 양해와 승낙을 받고 D 출판사에서 본인의 C 출판사 저작물을 제목만 바꾸어 다시 출판한 후 소속기관에 새로운 연구실적으로 신고하면 연구부정행위입니다. 여기에서 C 출판사와 D 출판사의 승낙이 명시적으로 있었더라도 소속기관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부정행위입니다. 심지어 소속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승낙 또는 양해하였더라도 두 출판사의 저작물은 다를 것이라는 공공의 신뢰를 위반하였으므로 연구부정행위입니다.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여 보면, 공동연구자 사이에서 실질적 기여도에 근거하여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연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출판물에 기재하는 기여도를 변경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입니다. 또한 각종 부적절한 저자권의 표기도 공공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므로 연구부정행위입니다. 다만 일종의 피해자가 승낙한 연구부정행위는 발견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3

## 부당한 저자표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연구윤리사례집

### 연구부정행위로서의 부당한 저자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부당한 저자표시 유형

유형

1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유형

2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2차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킬 때, 저자 표시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경우

- 공동 연구자로 포함시키든, 해당 부분은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밝혀야 함.

## 부당한 저자 표시 의심 사례

### 사례1 | 유형 2 위반, 2차 용역 후 저자 표시 누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연구윤리사례집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2차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 포함 시킬 때 저자 표시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 내에 누가 연구한 내용인지에 대해 그 작성자를 표시하고 있으나, 연구 보고서의 공동 집필자로 표시하고 있는 4인과 장별 연구 담당을 표시하고 있는 2인과의 관계 설정이 불명확함. 예컨대, 2장의 경우 집필진의 이 연구위원과 전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것인지, 아니면 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이 연구위원이 집필한 것인지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음(즉 교신저자 등의 표시). 서론 7면에서 표시하고 있는 ‘원고 위탁’의 의미가 불명확함.

축산계열화의 쟁점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농가조사 자료와 이산회귀모형 등 계량모형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중에서 생산성 분포와 평가방식에 따른 농가소득 변화분석은 외부전무가<sup>1)</sup>에게 의뢰하고, 해외 축산계열화 사례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가<sup>2)</sup>에게 원고를 위탁한다.

1) OO대학교 농업경제학과 OOO 조교수

2) OO대학교 경제연구소 OOO 선임연구원

### 해석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2차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받아 본 보고서에 포함할 때, 즉 본 보고서의 일부 장, 절을 타인의 협조를 얻어 작성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함.

- 1)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용역 받은 내용에 대한 글을 쓸 때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 및 감독을 해야 하며,
- 2)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을 본 보고서에 그대로 포함시킬 때 저자 표시를 어떻

---

게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함(공동 연구자로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해당 부분은 2차 용역을 수행한 000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야 함).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만약 본 보고서가 최종 발표되기 전에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먼저 관련 내용을 전문 학술지 등에 자신의 이름으로 먼저 발표할 경우,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 사례2 | 유형 1 위반, 퇴직자를 저자 명단에 누락

한국연구재단, 2021. 국내·외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례집

박사후과정에 입학한 연구교수A는 약 2년 동안 간, 신장, 폐 섬유화 모델을 만들고 RT-PCR, Proline assay 등의 지표를 측정하며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연구 논문은 학술지의 게재불가 판정으로 발표하지 못했고, 지도교수와도 갈등이 있어 이직했다. 그런데 이직을 한 뒤 박사후과정 동안 수행한 연구가 「Effect of Molecule inhibitor on lungs」라는 논문으로 자신을 제외한 다른 연구자의 이름으로 게재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부당한 저자표시로 제보했고, 지도교수C와 논문에 이름을 올린 5명은 부당한 저자표시로 조사를 받았다.

지도교수C는 연구교수A는 랩장으로 고용한 실험실 책임자로, 해당 연구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며 실험실 사람들이 함께한 연구에 대해 연구교수A를 제 1저자로 하여 여러 저널에 게재하려고 했으나 연구교수A가 다른 연구자들보다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소명했다. 또 연구교수A가 이직을 한 뒤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게재된 논문은 연구교수A의 실험을 박사과정생들이 재현해 새로 한 것이라 사실상 연구교수A의 실험은 논문에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연구교수A의 실험은 새로운 게 아니라 테크니션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실험이어서 연구교수A를 저자로 옮리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조사위원회는 제보된 논문 3편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했다. 본조사에서는 연구교수A의 연구를 단순한 실험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저자로 이름을 옮리지 않은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보를 기각했다. 또한 연구교수A가 재직 당시 게재하려던 논문과 최종 출판된 논문을 비교한 결과 유사성이 낮아 같은 논문이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연구교수A가 이의를 제기해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재조사에서는 연구교수A가 수행한 연구와 지도교수C의 논문에 나타난 그림과 표 등을 비교 분석

했다. 재직 당시 연구교수A의 연구노트, 이직한 후 박사과정생들이 작성한 연구노트를 자세히 분석했다.

조사 결과 박사과정생들은 논문의 그림이나 표 등에 나오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 완전한 이해가 없음에도 제1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연구교수A가 게재하려던 논문의 표나 데이터 분석이 지도교수C와 박사과정생들의 이름으로 출판된 논문에 그대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교수A가 저자로서 지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부당한 저자표시로 판정했다.

※ 검증과정: 1차 본조사 → 제보 기각 / 재조사 → 제보 인용

### 왜 부당한 저자표시인가?

저자란 연구 수행에 ‘지적’ 또는 ‘학문적’ 기여를 한 자를 의미한다. 부당한 저자표시란 연구 수행에 지적 또는 학문적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지적 또는 학문적 기여를 했음에도 저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구교수A는 박사후과정 중에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1저자로서 3편의 논문을 게재하려 하였으나 학술지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직을 한 뒤에는 박사과정생들이 연구를 이어받아 수행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연구를 수행했으므로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게 당연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해당 연구결과의 산출에 기여한 연구교수A를 저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이 실험을 행한다’는 자체만으로 저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험을 수행했다면 저자로 인정돼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실험의 결과, 원인, 효과 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주어진 실험을 수행했다면 학문적 기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이 사례의 교훈

간혹 연구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저자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올바르지 않다. 저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그들이 연구한 부분을 논문에 싣지 않거나, 그들이 연구한 부분을 완전히 이해한 뒤 새롭게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연

---

구한 부분을 사용하려면 연락 여부와 상관없이 저자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학술지에 알리고, 학술지의 인지와 허락 하에 출판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지도교수C는 연구교수A에게 연락을 취하고, 연락이 안 되더라도 기여도에 맞게 저자로 이름을 올려야 했다.

이 사례처럼 이직이나 진학 등의 이유로 연구 수행 중에 소속기관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면 데이터의 소유를 포함해 향후 논문을 출판할 때 연구 수행에 대한 저자 등재 등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해야 한다.

---

### 사례3 | 유형 1 위반, 부당한 저자표시

한국연구재단, 2021. 국내·외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례집

교수G, E는 대학에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를 진행하다가 새로운 모델 연구를 위해 교수F를 영입했다. 향후 작성할 논문은 모두 세 명이 공동저자나 교신저자를 하기로 약속했다. 2018년 교수E, F, G는 논문 「컴퓨터 사용에서 인간 행동 연구」를 학술지에 투고했다. 교수E를 제 1저자, 교수F를 교신저자, 교수G를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논문은 재심 판정을 받았고, 논문 수정은 교수E, F가 주도했다. 결국 최종 논문은 교수G의 이름이 삭제된 채 게재되었고, 이에 교수G는 공동연구 결과물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며 제보했다.

교수E, F는 교수G가 논문 작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같은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향후 투고할 논문에 서로 이름을 올려주기로 약속했지만 투고 논문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건 부당하다고 소명했다. 또한 교수G가 통계자료 일부를 작성했으나 이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며, 통계자료 역시 다른 논문에 주로 쓰이는 자료이므로 저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증거로 ‘논문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논문과 관련하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낸 이메일을 제출했다.

교수G는 내용 논문에 쓰인 일부 통계자료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며 초안을 작성하거나 재심의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최종 게재된 논문에 내가 기여한 일부 통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1차 논문 투고 과정에서 왜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는지, 피조사자의 소명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수E, F가 교수G의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그러

나 교수G는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강요로, 교수E, F는 1차 원고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교수G를 넣어주는 등 부당한 저자표시를 했다고 판단하여 세 교수 모두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 제보자 교수G의 연구부정행위

제보된 논문의 연구모델, 아이디어 개발, 연구방법 설계, 척도 개발, 설문지 작성 및 데이터 수집과 분석, 원고 집필 중 교수G가 한 부분은 설문지 일부분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것도 해당 연구가 아닌 세 교수가 다른 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일부를 위해 작성한 것이었다. 또한 설문지의 결과나 분석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고, 원고 집필에도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교수G가 최종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속 대학은 내부 연구윤리규정에 ‘타인에게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수G가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제보자지만 제재대상이 되었다.

### 피조사자 교수E와 F의 연구부정행위

교수E와 F는 최종 출판 논문에 교수G를 제외했지만 1차 원고에는 연구에 기여가 없는 교수G를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또한 이름을 올리기로 담합하고 부당한 제안을 했다. 또한 교수G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방조했다. 1차 논문을 투고할 때 교수G가 저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동저자로 표기한 행위는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

### 조치 결과

대학은 조작을 주도한 교수E와 F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교수G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 채 제보하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해 견책 조치를 내렸다. 해당 학회는 정당하게 연구에 기여한 교수E와 F가 저자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은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일부 연구비를 환수했다.

---

## 왜 부당한 저자표시인가?

부당한 저자표시는 두 가지가 있다.

- ①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를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 ② 연구에 기여하고도 저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

이 사례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저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 연구자는 연구를 함께 수행하면서 서로의 이름을 옮겨주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상호지원저자’의 형태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상호지원저자는 연구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논문에 서로의 이름을 옮겨주는 것을 말한다.

교수E와 F는 연구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은 교수G의 이름을 1차 논문에 옮겨주었을 뿐 아니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이름을 함께 옮기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한 실험실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그룹이 서로의 이름을 옮겨주는 것은 매우 흔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윤리의식은 결국 좋지 않은 결론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강요?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와 기타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다만 연구부정행위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기타’ 조항을 다양하게 해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로 본다. 독일과 같은 유럽에서도 타인에게 연구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하면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있다.

이 사례에서 교수G는 친분을 이용해 동료에게 자신을 저자로 넣을 것을 강요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강요했고, 심지어 연구부정행위로 제보까지 했다. 소속 대학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된 연구부정행위는 아니지만 대학 규정에 명시된 강요행위를 들어 연구부정으로 판단했다. 지침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자신이 하는 것도 모자라 타인에게 이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사례4 | 유형 1 위반, 자녀를 저자 명단에 등재

한국연구재단, 2021. 국내·외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례집

교수A는 지난 10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SCI에 모두 12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그런데 교수A의 미성년 아들인 C가 그 중 3편의 논문에 제 1저자 또는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때마침 2019년 ‘미성년 공저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수A와 그의 아들C의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났다.

교수A는 수차례의 소명 기회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며 불성실하게 임했다.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 실력이 월등히 좋고,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제 1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실험을 단순히 참관한 정도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여름방학 기간 내내 실험에 참여해 독자적인 실험 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했고, 대학원생들과 함께 실험에 참여해 일정 부분 연구결과를 내는 데 기여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고등학생인 아들을 3편의 논문에 제 1저자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부당한 저자표시로 판정했다. 조사위원회의 검증 및 조사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부적절행위’로 판정했다. 아울러 국가연구비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연구 참여제한 3년, 연구비 일부 환수 조치를 했다.

### 부당한 저자표시

교수A는 연구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직위를 이용해 SCI 논문에 제 1저자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연구노트를 보면 미성년 아들C는 아무런 연구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연구를 참관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며, 연구결과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자를 사적으로 저자로 이름을 올려주는 ‘선물저자’에 해당한다.

### 조사 방해

조사위원회는 여러 차례 교수A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교수A는 제대로 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증거자료가 부족해 연구를 함께 수행한 다른 연구자와 대학원생에게 연구노트 및 각종 관련 자료를 받아야만 했다. 또한 교수A는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노트나 관련 자료

---

를 제출하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하는 등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근거로 교수A의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 조치 결과

대학은 미성년 저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로 인정한 교수A에게 1개월 감봉 조치를 했다. 해당 학회는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아들여 3편의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로 철회했다. 연구비 지원기관은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일부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3년간 연구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 왜 부당한 저자표시인가?

이 사례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 2019년 미성년 공저 문제가 불거지면서 단순히 연구부정행위를 넘어 ‘정의와 공평한 기회’란 무엇인가 하는 화두가 대두되었다.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자격이 없는 자녀를 저자로 올리는 부도덕한 연구자들이 있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라도 연구에 지적 또는 학문적 기여를 했다면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 이 사례에서 교수A는 자신의 아들이 참관 이상으로 실험에 직접 참여했고,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연구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대학원생을 도와 보조 역할을 수행했을 뿐 연구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지적 또는 학문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아들을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이다. 이 사례처럼 적절한 기여가 없음에도 특정인을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 이 사례의 교훈

이 사례는 부당한 저자표시 중 ‘선물저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물저자는 자신이 보답하고

자 하는 사람에게 논문을 선물해주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미성년자를 공저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문을 추구할 자유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라도 연구에 참여해 지적 기여를 했다면 당연히 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연구에 기여없이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려 부당한 저자표시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연구 참여 전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특수관계인이 어떤 연구에 참여하고 기여했는지 철저하게 작성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대학이나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연구자 스스로 원칙을 지켜 우선적으로 부당한 저자표시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 사례5 | 유형 1 위반, 연인 사이의 연구부정행위

한국연구재단, 2021. 국내·외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례집

박사과정생E와 석사과정생H는 연인 사이였다. 박사과정생E는 자신의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논문을 게재하면서 석사과정생H를 저자로 이름을 올려주었다. 교수J는 논문을 검색하다가 제자인 박사과정생E의 논문을 발견했다. 학술지에 게재한 그 논문은 박사과정생E의 석사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논문에는 그의 연인인 석사과정생H가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교수J는 석사과정생H가 저자로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대학에 제보했다.

박사과정생E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나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석사과정생H도 일부 지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석사과정생H가 석사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게재했고, 영문 초록을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했으므로 석사과정생H도 저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대학의 조사위원회 검증 결과 석사과정생H는 해당 논문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문 초록을 수정하는 정도의 기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저자로서 이름을 올리기에 충분하지 않은 지적 기여로, 석사과정생H는 단지 연인이라는 이유로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학은 두 사람 모두에게 부당한 저자표시로 판정을 내렸다.

---

## 조치 결과

박사과정생E와 석사과정생H는 모두 학생이어서 대학에서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경고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학술지는 해당 논문을 철회하고 박사과정생E와 석사과정생H에게 논문 투고 금지 1년을 결정했다.

##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부정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연구부정행위이다. 재작년과 작년에 불거진 ‘미성년 공저자’ 문제도 부당한 저자표시 중 하나로,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연구에 기여한 게 없는데 이름을 올려주는 행위에는 ‘명예저자’, ‘강요저자’, ‘상호지원저자’ 등이 있다. 명예저자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명한 연구자나 상급자의 이름을 넣어주는 경우이다. 명예저자에는 ‘선물저자’ 또는 ‘손님저자’가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보답이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저자로 이름을 올려주는 경우이다.

이 사례도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부정행위로, 선물저자에 해당한다. 연구자에게 있어 저자가 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자신의 연구결과에 공로를 인정받는 행위로, 자신의 경력에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처럼 사적인 이해관계로 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결국 연구계의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연구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지적 기여를 한 사람만 논문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 부당한 저자표시 FAQ



**학술지 논문의 교신저자가 제3자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학회는 어떠한 조처를 할 수 있을까요?**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출판

투고자의 소속이 같은 대학이고 학생과 교수의 공저자로 구성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학위논문이 아닌지 정보 검색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학회 편집책임자는 학위논문을 발췌하거나 발전시켜서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학술지 논문의 첫 페이지 논문 정보란에 관련 내용을 기입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내용이 상당부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구성이 학생과 지도교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학생과 제3의 저자 등 2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제3의 저자가 추가되어 총 3명의 저자로 구성된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편집 및 수정 과정에서 게재 불가 처리하는 것이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본 사례는 교신저자가 제3자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이 학위논문과 상당 부분 다르고, 연구결과가 상이하고, 발전적이고 추가로 수정된 내용을 많이 포함하여 학위논문과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이고, 지도교수는 학술지 논문 작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교신저자를 지도교수가 아닌 제3자가 맡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술지 편집책임자의 판단 하에 논문을 제출한 제1저자나 교신저자에게 지도교수의 사실 확인서(학위논문과 연관된 학술지 논문이 접수되었고 지도교수가 공저자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건)를 요구하여 받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 시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학위논문의 심사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저자로 표기된 교수가 부당한 저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내용은 전체적 맥락은 같으며 일부**

---

**내용이 수정과 보완이 있었는데, 공저자 교수는 본인이 이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1저자와 교신저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제3의 저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경우처럼 전체적 맥락이 같은데 일부 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부당한 저자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학술지 논문이 단순히 학위논문을 발췌하고 요약한 논문이 아니고, 새로운 가설이나 데이터의 추가, 연구방법의 변경, 연구시사점의 수정 등을 근거로 추가된 공동저자의 역할이 인정되고, 모든 저자들이 이에 동의하므로 제3의 저자가 추가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술지 논문 편집책임자와 익명의 심사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Q**

**가족 간인 저자들의 전공은 다르나 연구 관심 분야가 같고 비슷한 주제의 연구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게재하여도 되는데, 부부간, 부모-자식 간 함께 공동저자로 논문을 집필하는 것은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닐지 의심이 됩니다. 또한 가족 간 저자 중 일부가 석사나 박사학위를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어느 선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해당 연구에 참여하였고 저자 자격을 부여할 만큼 충분하게 기여를 했다면, 그 신분이 가족이라도 공동저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연구기관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연구 참여와 논문 공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규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술지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에 가족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소속기관 내규

가족  
간  
공  
동  
논  
문  
발  
표

와 해당 학술지가 요구하는 사항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명확한 근거나 증빙(연구노트 등)이 없이 가족을 논문의 공저자로 포함시켜 나중에 문제(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조사 진행)가 된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가족을 논문의 공저자로 포함시키기 전에 해당 가족이 충분한 저자자격이 있는지를 내용적·형식적 측면에서 잘 검토하기 바랍니다.

#### 근거자료

- 1)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2021년 5월

# 4

## 부당한 중복게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연구윤리사례집

### 연구부정행위로서의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함.

###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내용(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상당 부분 원문 그대로 자신의 후속 연구 보고서에 옮기는 경우, 비록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재해석되어 활용되지 않고 단순 지면 채우기식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움(연구로서의 가치)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중복게재 유형

**유형 1**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이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마치 새로운 것을 처음 발표하는 것으로 오해케 하는 경우)

**유형 2** 출처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기저기서 가져와 활용하면서도 어느 일부분만 출처를 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표시하지 않는 경우)

**유형 3** 출처표시를 한 중복게재 (자기표절)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했지만, 이후 저작물의 목적이나 논리 전개 등에 맞게 이전 저작물을 재해석, 재구성 등 비판적인 활용이나 새로움이 더해지는 활용이 아니라 단순히 관련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아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 면에서 별로 기여도 가 없는 경우

## 표절 의심 사례 -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사례 1 | 유형 1 위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고 있음. 본 보고서의 해당 부분은 저자 ○○○가 이전(2009년)에 연구한 보고서의 내용을 출처 표시 없이 상당 부분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

#### 종복 게재 의심 부분

환경부(2009)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유기성폐기물가스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시설은 38개소로서 폐기물 처리용량은 일일 2만ton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들을 처리되는 폐기물에 따라 분류하면 하수슬러지 소화조가 17개소로 가장 많으며, 10개 시설은 병합처리 시설이다. 유기성폐기물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대부분 정화조 가열 연료 또는 발전용 연료 등으로 사용되었다. <표 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에 생산된 전체 바이오가스 중 61.0%가 시설 내에서 단순 연료로 쓰였고, 발전 연료로 사용된 비율이 19.7%, 소각 또는 대기 중 배출 등 단순 처리된 양도 15.8%에 이르렀다. 연료 자체로 이용하는 경우 외에도 생산된 전력 모두를 시설 내에서 자체 소비하는 사례가 발전용 연료로 활용하는 12개소 중 9개소에 달하는 등 생산된 에너지가 대부분 자체 소비되고 있었다. 그 결과, 총 38개 시설 중 에너지를 외부에 판매하는 시설은 전력 3개소, 가스 직접 판매 1개소 등 총 4개 시설뿐이어서 아직까지는 바이오가스 활용의 상업화 수준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표 II-1>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08)

(단위: Sm<sup>3</sup>)

유기성폐자원	가스생산량	가스 이용 현황			단순 처리
		발전	외부 판매	자체 연료 이용	
음식물쓰레기	4,223,867	4,223,867	-	-	-
음폐수	3,845,701	-	-	2,905,701	940,000
가축분뇨	2,759,332	2,643,472	-	47,980	68,480
하수슬러지	22,335,935	556,419	-	19,271,737	2,507,819
병합	11,218,255	1,324,958	1,561,295	4,827,012	3,504,990
계	44,383,090	8,748,716	1,561,295	27,051,830	7,021,289
		(19.7%)	(3.5%)	(61.0%)	(15.8%)

출처: 환경부(2009)의 원자료를 가공

바이오가스를 가스 형태로 판매하는 유일한 시설은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인데 이곳에서는 2008년에 음식물쓰레기 11,749ton, 하수슬러지 20,440ton 등 총 32,189ton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184만 S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였다. 이 가운데 약 85%인 156만S을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시설과 인접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여 4,372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해당 시설은 2009년 (주)스칸디나비안가스코리아가 울산광역시로부터 건설·운영 후 양도(BOT) 방식으로 운영권을 넘겨받아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를 진행, 설비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그 결과 2010년 10월 현재 같은 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 기준으로 설비 개선 이전 대비 4.5배 늘어난 하루 180ton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 생산량 또한 정제 전 기준 5배 늘어난 연간 1천 1백 만(메탄 함량 60%)에 이르고 있다.

### 증복 계재 의심 부분 대상 원문

유기성폐기물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대부분 정화조 가열 연료 또는 발전용 연료 등으로 사용되었다. <표 II-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에 생산된 전체 바이오가스 중 61.0%가 시설 내에서 단순 연료로 쓰였고, 발전 연료로 사용된 비율이 19.7%, 소각 또는 대기 중 배출 등 단순 처리된 양도 15.8%에 이르렀다. 연료로 자체 이용하는 경우 외에도 생산된 전력 모두를 시설 내에서 자체 소비하는 사례가 발전용 연료로 활용하는 12개소 중 9개소에 달하는 등 생산된 에너지가 대부분 자체 소비되고 있었다. 그 결과, 총 38개 시설 중 에너지를 외부에 판매하는 시설은 전력 3개소, 가스 직접 판매 1개소 등 총 4개 시설 뿐이어서 아직까지는 바이오가스 활용의 상업화 수준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바이오가스를 가스 형태로 판매하는 유일한 시설은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인데 이곳에서는 2008년에 음식물쓰레기 11,789톤, 하수슬러지 20,440톤 등 총 32,189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184만 S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였다. 이 가운데 약 85%인 156만S을 정제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과 인접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되어 4,372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판매단가로 보면 28.0원/로서 바이오가스로 전력을 생산, 판매한 시설의 바이오가스 1당 279.53원의 수입(收入) 창출액 195.2원보다 매우 낮다.<sup>2)</sup> 그러나 바이오가스를 정제하여 천연가스 산업용 도매요금 수준으로 판매한다면 바이오가스 1당 279.53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어 단순 비교 시 현재로서는 가스 판매에 의한 부가가치가 더 높은 상황이다.<sup>3)</sup>

- 계속 -

&lt;표 II-2&gt;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08)

유기성폐자원	가스생산량	가스 이용 현황			단순 처리
		발전	외부 판매	자체 연료 이용	
음식물쓰레기	4,223,867	4,223,867	-	-	-
음폐수	3,845,701	-	-	2,905,701	940,000
가축분뇨	2,759,332	2,643,472	-	47,980	68,480
하수슬러지	22,335,935	556,419	-	19,271,737	2,507,819
병합	11,218,255	1,324,958	1,561,295	4,827,012	3,504,990
계	44,383,090	8,748,716	1,561,295	27,051,830	7,021,289
		(19.7%)	(3.5%)	(61.0%)	(15.8%)

자료출처: 환경부(2009a)의 원자료를 가공

### 중복 개재 의심 부분

유기성폐기물의 분해로 발생된다는 측면에서 광의의 바이오가스에 해당하는 매립가스는 국내에서 에너지화가 상당히 앞서있는 편이라 할 수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국내 매립가스 에너지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수도권매립지를 포함,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확보한 광역지자체 매립장을 중심으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 중 략 -

또한, 이러한 매립가스 생산 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민간투자 등을 통해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15개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의 에너지 판매 수입은 2007년 총 327억 원에 달하였으며 일부 시설은 CDM사업 등록을 통한 매출권 확보로 추가적인 수입도 기대하고 있다.<sup>4)</sup>

&lt;표 II-2&gt; 매립가스 생산 및 이용현황('07)

(단위: Sm<sup>3</sup>)

구분	시설	운영실적			비고
		가스이용량 (m <sup>3</sup> /분)	에너지생산량 (천m <sup>3</sup> , MWh)	에너지판매액 (백만 원)	
가스공급	서울(난지도)	35.7	18,752	643	지역난방
	대구(방천리)	97.5	51,243	6,462	지역난방
	울산(성암동)	10.6	5,571	1,213	산업보일러
	강원 원주(홍업)	-	197*	(무상공급)	비닐하우스
	소계	143.8	75,763	8,318	
발전시설	수도권 매립지	488	198,773	17,784	스팀터빈
	기타(10개소)	98.5	66,365	6,611	가스엔진
	소계	586.5	265,138	24,395	

\*추정치 출처: 환경부(2008)

## 중복 계재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다. 매립가스

#### 1) 활용 현황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바이오가스 발생원 별로 보았을 때 국내에서 에너지화가 가장 앞서 있는 분야는 매립가스이다. 일반적으로 매립가스의 경우 그 가스 발생량이 일정 규모 이상(10/분)이 되어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제기술의 발전, 신재생에너지 지원,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중규모(3/분) 이상의 매립장에서도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국내 매립가스 에너지화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매립지를 포함,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확보한 광역지자체 매립장을 중심으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시설들에서의 바이오가스 활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11개 매립장에서 비교적 전처리 과정이 용이한 발전용 연료로 바이오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구 방천리 매립장 등 4곳에서는 바이오가스를 가스 형태로 외부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매립가스 생산 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민간투자 등을 통해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15개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의 에너지 판매 수입은 2007년 총 327억원에 달하였으며 일부 시설은 CDM 사업 등록을 통한 배출권 확보로 추가적인 수입도 기대하고 있다.<sup>8)</sup>

<표 II-6> 매립가스 생산 및 이용 현황('07)

구분	시설	운영실적			비고
		가스이용량 (m <sup>3</sup> /분)	에너지생산량 (천m <sup>3</sup> , MWh)	에너지판매액 (백만 원)	
가스공급	서울(난지도)	35.7	18,752	643	지역난방
	대구(방천리)	97.5	51,243	6,462	지역난방
	울산(성암동)	10.6	5,571	1,213	산업보일러
	강원 원주(홍업)	-	197*	(무상공급)	비닐하우스
	소계	143.8	75,763	8,318	
발전시설	수도권 매립지	488	198,773	17,784	스팀터빈
	기타(10개소)	98.5	66,365	6,611	가스엔진
	소계	586.5	265,138	24,395	

\*추정치

출처: 환경부(2008)

## 중복 계재 의심 부분

경동도시가스와 SK에너지 사례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경동도시가스를 통해 판매하는 계약량은 삼성BP에 1,500m<sup>3</sup>/hr, 동서석유화학에 1,000m<sup>3</sup>/hr이다. 동서석유화학 판매분의 경우 동서석유화학이 산업용 소매가의 89%를 경동도시가스에 지불하면 경동도시가스에서 공급비용 (2009년 말 기준 50.29원/m<sup>3</sup>)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SK에너지에 구입대금으로 지불하는데 이는 산업용 도매가 대비 88%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삼성BP에 공급되는 부생가스의 가격은 경동도시가스가 개입하기 이전 SK에너지-삼성BP 사이에 체결된 계약조건을 승계한 관계로 도시가스 가격에 연동되지 않은 별도의 계약 조건을 따르고 있다.

## 중복 계재 의심 부분 대상 원문

2009년 현재 SK에너지가 경동도시가스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부생가스의 양은 삼성BP에 1,500m<sup>3</sup>/hr, 동서석유화학에 1,000m<sup>3</sup>/hr 수준이나 잉여 부생가스 발생량에 따라 실제 공급량은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2008년의 경우 SK 에너지의 부생가스 실제 연간 판매량은 삼성 BP에 664만Nm<sup>3</sup>, 동서석유화학에 571만Nm<sup>3</sup> 등 총 1,236만Nm<sup>3</sup>로 경동도시가스 연간 공급량 10.6억m<sup>3</sup>(‘07년 기준)의 1.2% 수준이었다. 2009년 현재 부생가스의 가격에 관하여는 동서석유화학의 경우 산업용 소매가(‘09년 8월 현재 689.07원/m<sup>3</sup>)의 89%를 지불하면 경동도시가스에서 공급비용 50.29원/m<sup>3</sup>을 제한 금액을 SK에너지-삼성BP 사이에 체결된 계약조건을 승계한 관계로 도시가스 가격에 연동되지 않고 나프타 가격에 기초한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공급비용의 경우 계약 상에 정해진 물량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경동도시가스에서 거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증복 계재 의심 부분

<표 II -3>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한 나프타부생가스 판매 현황

부생가스 생산자	도시가스사업자	공급처	판매(계약)량* (백만m <sup>3</sup> /년)	부생가스 특성
SK에너지	경동도시가스	삼성 BP	12	열량 약 8천kcal/m <sup>3</sup> 90% 이상 메탄, 수소 7~8%
부생가스 생산자	도시가스사업자	공급처	판매(계약)량* (백만m <sup>3</sup> /년)	부생가스 특성
SK에너지	경동도시가스	동서석유화학	8	-
삼성토탈	서해도시가스	KCC	42	프로판 등으로 열량을 맞추어 공급(수소 7%)

\*SK에너지의 판매량은 시간당 판매량을 연간 330일 기준으로 환산

## 중복 계재 의심 부분 대상 원문

<표 II-9>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한 나프타부생가스 판매 현황

부생가스 생산자	도시가스 사업자	공급처	판매(계약)량*	부생가스 특성	배관망 연결 여부
SK에너지	경동도시가스	삼성 BP	12	열량 약 8천kcal/m <sup>3</sup> 90% 이상 메탄, 수소 7~8%	완전 분리
SK에너지	경동도시가스	동서석유화학	8	-	완전 분리
삼성토탈	서해도시가스	KCC	42	프로판 등으로 열량을 맞추어 공급(수소 7%)	차단

\*SK에너지의 판매량은 시간당 판매량을 연간 330일 기준으로 환산

## 해석 및 시사점

연구는 이전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더 심화 확대될 수 있음. 따라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여 이후의 저작물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저작물의 활용은 정당화될 수 있음. 다만 활용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든 상당 부분이든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그것이 처음 공개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함. 자신의 후속 저작물에 사용된 이전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믿게 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

- 원 보고서에 있는 표를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본문 및 각주가 누락될 경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중복계재로 판단할 수 있음.

## 사례2 | 유형 3 위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연구윤리사례집

해당 내용은 ○○○의 2007년 연구보고서의 상당한 부분을 그대로 차용하였고, 참고문헌 및 본문에 이를 밝혔으나, 이전 저작물을 재해석, 재구성 등 비판적인 활용이나 새로움이 더해지는 활용이 아니라 단순히 관련 내용을 가져다 붙여놓음.

### 종복 개재 의심 부분

손상영 외(2007)에서는 Moore를 포함하여 비즈니스 생태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저자들과 논문들 간의 개념 비교 분석(conceptual analysis)을 통해 각자 주장하는 바와 차이점을 파악하여 정리한 바 있다. 비즈니스 생태계 연구 분야에서 대표적인 학자들과 그들의 저술로는 Moore(1996, 1998), Iansiti & Levien(2004), Iansiti(2005), Power & Jerjian(2001), Gossain & Kandiah(1998), Lewin & Regine(1999) 등이 있다. 이들을 정리하여 연구자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생태계의 개념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저자	주요 주장
Moore (1996,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작용하는 조직과 개인들에 의해 지원되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supported by a foundation of interact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1996</li> <li>*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leadership companies → keystone species</li> <li>- extended systems of mutually supportive organizations, 1998</li> <li>- 1996년은 비즈니스생태계 내의 상호작용 강조, 1998년은 분산된 의사결정과 자기조직화 강조</li> <li>- industry를 ecosystem으로 용어를 대체하자고 주장</li> <li>- life-cycle : birth → expansion → leadership → self-renewal or death</li> <li>- Moore의 개념은 cluster 또는 value network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li> </ul>
Iansiti & Levien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siness ecosystem의 주요 특징 : fragmentation, interconnectedness, cooperation, competition</li> <li>- 세 가지 성공요인 : productivity, robustness, the ability to create niches and opportunities</li> <li>- 기업의 네 가지 역할 : keystones, niche players, dominators, hub-landlords(Iansiti(2005))</li> <li>- 자연계와 다른 점</li> <li>*actor가 지능적이며, 미래를 예견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갖춤</li> <li>*비즈니스 생태계는 가능한 구성원 모두가 서로 경쟁함</li> <li>* 자연계는 순수한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비즈니스 생태계는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li> </ul>
Power & Jerjian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는 integrated electronic business를 구성</li> <li>- 많은 비즈니스가 WWW에 매우 의존하는 것에 주목함</li> <li>- 기술적인 연결성을 중시하나 가상기업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음</li> <li>- 주요 이해 관계자 : shareholders, employees, businesses, customers</li> <li>- 비즈니스 생태계는 매우 연결성이 높은 단일 기업에 의해 형성됨을 주장</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ossain and Kandiah(1998)</li> <li>- 가치 창조의 중요성 인식</li> <li>- 생태계의 중심적 역할은 파트너 및 공급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유형만 business ecosystem에 포함</li> <li>- integrated value chain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유사함</li> <li>*Lewin and Regine(1999)</li> <li>- 복잡계 개념의 적용 필요성 시사</li> </ul>

## 중복 게재 의심 부분 대상 원문

본 연구에서는 Moore를 포함하여 비즈니스 생태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저자와 논문간의 개념 비교 분석(conceptual analysis)을 통해 각각이 주장하는 바와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비즈니스 생태계의 개념과 논의를 담은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Moore(1996, 1998), Iansiti & Levien(2004), Iansiti(2005), Power & Jerjian(2001), Gossain & Kandiah(1998), Lewin & Regine(1999) 등이 있다. 본 연구자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생태계의 개념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저자	주요 주장
Moore (1996,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economic community supported by a foundation of interact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1996</li><li>*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leadership companies → keystone species</li><li>- extended systems of mutually supportive organizations(1998)</li><li>- 1996년은 비즈니스생태계 내의 상호작용 강조, 1998년은 분산된 의사결정과 자기조직화 강조</li><li>- industry를 ecosystem으로 용어를 대체하고 주장</li><li>- life-cycle : birth → expansion → leadership → self-renewal or death</li><li>- Moore의 개념은 cluster 또는 value network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li></ul>
Iansiti & Levien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usiness ecosystem의 주요 특징 : fragmentation, interconnectedness, cooperation, competition(2004)</li><li>- 3가지 성공요인 : productivity, robustness, the ability to create niches and opportunities</li><li>- 기업의 네 가지 역할 : keystones, niche players, dominators, hub-landlords(Marco Iansiti, "Managing the Ecosystem," Optimize, Feb 2005.)</li><li>- 자연계와 다른 점</li><li>*actor가 지능적이며, 미래를 예견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갖춤</li><li>*비즈니스 생태계는 가능한 구성원 모두가 서로 경쟁함</li><li>*자연계는 순수한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비즈니스 생태계는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li></ul>
Power & Jerjian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생태계는 integrated electronic business를 구성(2001)</li><li>- 많은 비즈니스가 WWW에 매우 의존하는 것에 주목함</li><li>- 기술적인 연결성을 중시하나 가상기업도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음</li><li>- 주요 이해 관계자 : shareholders, employees, businesses, customers</li><li>- 비즈니스 생태계는 매우 연결성이 높은 단일 기업에 의해 형성됨을 주장</li></ul>

## 해석 및 시사점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물의 상당 부분을 이후 연구보고서에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본문에 그 출처를 밝혔지만, 이후 저작물의 취지나 맥락에 맞게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요소가 더해지는 발전적 활용이 되지 못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의 의혹을 받을 수 있음. 즉,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물을 활용하여 이후의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특히 이전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이후의 저작물이 이전 저작물과 차이가 나는 의미있는 내용이나 해석(비판적 관점 등)이 가미되지 않고 단순히 관련 내용을 붙여놓는 것이라면 올바른 글쓰기라고 할 수 없음.

## 부당한 중복게재 FAQ

한국연구재단, 2025.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부당한 중복게재의 정의에서 의미하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부당한 중복게재의  
정의

부당한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발표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판단할 때는 연구의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가설, 표본 수, 데이터, 동일한 방법론, 유사하거나 동일한 결론, 새로운 정보의 차이 등을 살펴본 후 두 연구의 동일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단순히 한 두 가지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해서 두 연구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기준이 지속적으로 겹친다면 중복게재로 판정될 확률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나요?**



부당한 중복게재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동일한 데이터나 연구방법론, 연구주제, 연구자료를 중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데이터나, 연구주제, 연구자료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학술적 가치가 부여될 경우는 “부당한 중복게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학술적 가치의 기준은 학문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연구주제는 동일하지만 사례가 서로 다르거나,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했으나 연구주제와 연구

---

방법론이 다르다거나 유사한 논문이라고 할지라도 독자층이 다르다거나 하는 등 새로운 학술적 가치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고, 그 게재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나요?**



비록 동일한 연구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출처표시를 하고 다시 게재하거나 출판하는 것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허용되는 2차출판’이라고 부릅니다. 박사학위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학회 발표 논문과 같이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은 연구결과물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연구결과물을 동료심사를 거치는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비록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에 대해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학술지의 동료심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연구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독자층이 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해, 학위논문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부당한 중복게재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학술지 논문에 먼저 출판한 후 해당 내용을 학위논문에 활용하는 것 또한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지 않습니다.



**박사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때, 몇 편까지 학술지 논문에 출판할 수 있나요? 만약 두 편 이상 출판하면 논문 쪼개기가 되나요?**



박사학위논문을 학술지에 출판할 때, 출판할 수 있는 논문 편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문 쪼개기란 하나의 연구결과물로 충분히 발표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2개 이상의 소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위논문을 학술지로 출판하고자 하실 때에는 연구의 결과나 내용, 주제, 연구방법론, 학술지의 특징 등을 고

려하여 한편의 논문으로 출판할 수도, 여러 편의 논문으로 출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구 성과를 위해 한편으로 출판할 수 있는 논문을 여러 개로 나누어 출판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근거 자료

- 1) COPE, Text recycling guidelines for editors, <https://publicationethics.org/text-recycling-guidelines>  
(접속일: 2024. 6. 24.)
- 2)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3) 이효빈 외, 2019,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p.45



**허용되는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은 무엇이며, 이중게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차출판과 이중게재

이중(duplicate) 혹은 중복(redundant) 게재는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은 새로운 학술적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면 동일한 연구결과라고 하더라도 출판이 가능합니다. 먼저, 저자는 출판하려고 하는 저널과 이미 출판된 저널의 편집인 모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차 출판을 하려는 출판물에 독자, 심사자, 편집부에 연구의 일부 또는 전체가 다른 곳에 이미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차출판의 예로는 국문으로 발표했던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한의학회의지에 발표한 논문을 용어 등을 바꿔 써서 물리학회지에 발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정책연구보고서 중 일부를 논문으로 출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할까요?



용역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거나 소속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한 후 작성한 보고서를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은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 연구보고서의 경우, 동료심사를 진행한 후 출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학술지는 이와 달리 동료심사를 통해 연구의 질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보고서보다 독자층이 넓습니다.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해 보고서의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의 소유가 됩니다.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의 허락 없이 보고서의 내용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논문으로 작성하기 전 연구비 지원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를 논문으로 게재할 때에는 해당 논문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논문에 표시해야 합니다(이는 학문분야마다 다르므로 학문분야의 관례를 따라야 합니다).



현재 국가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며, 그 연구를 바탕으로 졸업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공적으로 수행한 연구를 제 졸업 논문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많은 대학원생들이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고, 해당 연구를 박사학위 논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하고 수행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 과제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가 보안과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안과제의 경우, 소속기관의 허락 없이 함부로 학위논문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안과제의 경우 학위논문에 활용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인지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안과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

당 연구를 여러 명이 관여했을 때입니다. 여러 명이 관여한 연구인 경우 다른 연구자들도 해당 연구에 기여했다면 질문자의 학위논문에 실리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에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를 함께 진행한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관련 사실을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위논문에 활용한 연구결과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내용임을 밝혀야 합니다.



**국내에서 게재한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에서 이미 출판된 논문임을 알고 외국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이미 출판한 국문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한 후 해외학술지에 내는 것은 연구 확산의 차원에서 새로운 독자층을 얻는 일에 해당함으로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심해야 하는 출판 윤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 출판한 논문의 학술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판하려고 하는 학술지 편집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 후, 출판될 논문에 각주나 사사표기 등을 통해 독자에게도 이것이 이차출판물임을 알려야 합니다. 두 논문은 번역을 해서 다른 언어로 쓰여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논문은 하나의 논문이기 때문에 실적은 하나의 논문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둘 중에 어느 논문을 실적으로 인정받을 것인지 저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실적으로 인정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근거 자료

- 1) 김광민, 2010, 이중 게재와 이차 출판,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31(7), 501-502
- 2)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의 일부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나요?



부당한 중복게재의 정의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전 연구결과를 다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밝힌다면, 이것을 부당한 중복 게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주저자인 경우, 공동연구자가 있는 학술지 논문 중 일부 연구를 다시 재사용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자신이 주저자로 참여한 연구의 일부를 또 다른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부당한 중복게재가 되지 않도록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이전 연구결과와 다른 연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학술적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연구자의 저자표시 여부입니다. 공동연구인 경우, 자신이 수행한 연구만을 가지고 더욱 발전시켜 연구를 수행한다면, 굳이 공동연구자를 저자로 표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국문 논문을 번역하여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처럼 이전 연구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자를 저자로 함께 올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연구 결과의 활용 정도에 따라 공동연구자에게도 연구기회를 주어 함께 연구를 수행할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논문을 일부 활용할 때, 이론적 배경이 중복되는 경우 기술 방식만 다르다면 부당한 중복게재 문제를 벗어날 수 있나요?



자신의 연구 중 일부, 특히 이론적 배경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처표시를 한 후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일한 연구배경으로 진행한 연구가 쪼개기에 의한 중복출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연구의 차별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기존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설문을 바탕으로 하여, 두 편의 논문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나요?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두 편의 논문을 출판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중복게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설문조사를 활용하더라도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연구범위, 연구결과가 달라 두편의 논문이 서로 다른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고 한다면 두 논문은 동일한 설문조사를 사용했으나 다른 논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 기획 단계로부터 2편의 논문을 목적으로 차이가 나도록 연구방법 및 분석을 시행하였을 경우,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얻은 후 2편의 논문으로 작성하기로 한 경우라면, 두 편이 쪼개기에 의한 중복게재가 아닌 독자적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면 됩니다.

#### 근거 자료

-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 규칙
- 2)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5

## 부실 학술 활동 SAFE

### 의심 학술지란?

#### 위조학술지 (Hijacked Journals)

유명학술지와 유사한 학술지 이름을 사용하여 저자에게 혼동을 주는 학술지

#### 약탈적 학술지 (Predatory Journals)

돈만 지불하면 무조건 게재해주고 출판 윤리를 어기는 학술지

#### 대량발행학술지

SCI나 Scopus 등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학술지 한 호를 발행할때마다 대량으로 발행하여 출판 윤리를 어기는 학술지

### 의심 학술지의 특징

구분	특징
동료심사	동료심사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됨
마케팅	이메일/홈페이지/영향력지수 등을 내세워 공격적 마케팅 진행
운영정보	편집부나 심사자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함
학술지 학문범위	특정 전문 분야보다 다양한 학문 분야 전반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음
비용처리	명확한 사전 공지 없이 추후에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음

## 부실 학술 행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학술행사 참가비만 내면 동료심사 없이 학술발표를 보장하나, 실제로는 조직위원, 심사위원 및 좌장없이 허위로 운영되는 학술행사를 말함. 유명 국제학술행사인 것처럼 허위 정보로 웹사이트를 꾸미고 논문 발표 또는 초청 발표로 연구자의 참가를 유도하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부실 학술행사 체크리스트

Conference Checker	Y	N
해당 학술행사의 주관사 또는 협회를 알고 있습니까?		
학술행사 개최 장소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연사로 참석한다면, 어떤 비용(행사비, 등록비 등)이 발생 또는 면제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정리되어 있습니까?		
해당 학술행사는 스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 중 아는 기관이 있습니까?		
학술행사의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까? 모든 정보(참가비, 제출일자, 행사일자, 편집위원회, 프로그램 세부정보, 개최장소 등)가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행사 일정과 의제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제공되고 있습니까?		
이전에 해당 학술행사의 프로시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편집위원회 목록이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안내된 편집위원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학술행사의 주제 범위와 목적이 당신의 연구분야와 주요 연구관심사에 맞습니까?		
편집위원회는 프리젠테이션 편집권과 동료심사 유형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 부실 학술 활동 FAQ

한국연구재단, 2025.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 부실학술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의나 특징은 무엇인가요?



부실(또는 약탈적)학술지는 명확히 정의하거나 배제하기 어려우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실학술지 List는 없습니다. 즉, 현재 부실학술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실학술지들은 공통적으로 학술발전과 지식의 진보를 위해 모범적으로 동료심사를 실시하는 학술지와는 달리 이익 추구로 인해 동료심사를 부실하게 실시하는 학술지를 의미합니다.

부실학술지의 특징은 매우 다양하나, 자주 언급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엄격한 동료심사 없이 유료로 신속하게 논문을 게재함
- ② 저명한 연구자나 과학자가 학술의 편집위원인 것처럼 가장함
- ③ 학술지가 사기성 영향력 지수 등을 활용하여 학술지의 권위를 선전함
- ④ 학술지 타이틀을 기준의 전통적인 학술지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름을 사용함
- ⑤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장함

#### 근거 자료

1) 이효빈 외, 2019, 부실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대책, NRF ISSUE REPORT 2019\_1호, 한국연구재단



### 부실학술지에 투고 후 다른 저널에 투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무리 부실학술지라고 하더라도 한번 출판된 논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실학술지에서 철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저널에 투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부실학술지에 투고된 후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게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학원생이 부실학술지인지 모르고 논문을 투고하였고,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학술지는 이를 거절하고 출판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실학술지와 중복게재

부실학술지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를 투고하였고, 부실학술지에 철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학술지에게 강력하게 시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학술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판비용을 요구한다면 출판비용을 내지 않기를 권고 드립니다. 출판비용을 내지 않아 출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학술지에 출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출판으로 이어진 이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시면 부당한 중복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출판비용을 내지 말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부실학술지에 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고 해외에 있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였습니다. 해외 학술지가 아닌 국내 다른 저널에 동일한 논문을 출판해도 될까요?**

해외에 있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였고, 동일한 내용을 국내 저널에 출판하는 것은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합니다. 만약, 번역을 해서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언어를 달리한 후 해외학술지에 출판 승인을 받고 국내학술지에도 승인을 받은 후 출처를 표시한 다음 논문을 출판한다면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투고하려던 논문은 A였으나 이와 유사한 B에 논문을 투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B저널 편집자에게 논문 철회를 요청했으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저는 논문에 대한 어떠한 수정 사항도 받지 못한 채 논문이 출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한번 출판된 논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판하는 것은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질문을 보면, 권위적인 저널의 이름을 사용하여 연구자를 현혹하는 위조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고를 투고하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까요?



부실(부실의심 또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소속 기관의 내규와 정책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행위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제가 출판한 한 논문이 부실학술지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할 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부실학술지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는 것 자체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러나, 각 대학이나 기관마다 연구윤리 내규가 있고 내규에서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라고 정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검증에서 자신이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게 된 경위, 이유 등을 성실히 답변하시어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A출판사에 게재한 논문이 저도 알지 못한 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적도 없고, 제 논문에 대한 게재를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질문자의 내용을 토대로 짐작건대, 부실학술지에 의해 논문이 무단으로 도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실학술지는 투고된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출판된 논문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메일을 통해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철회를 해주지 않을 경우, 논문을 실제로 출판한 학술지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SCIE에 색인되어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고, 별쇄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SCIE에서 제 논문을 검색해 보니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학회 홈페이지에서는 제 논문이 그대로 실려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을 SCIE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인정받아도 될까요?



부실학술지 중에는 한호에 대량으로 논문 게재를 승낙한 후 실질적으로 SCI나 SCOPUS 홈페이지에는 승낙한 논문의 일부만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저널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해당 저널이 SCI나 SCOPUS에 색인되었다는 사실만 믿고 의심 없이 원고를 투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널들은 대량으로 논문

게재를 승낙하기 때문에 질이 낮은 논문이 실리기도 하는데, SCI나 SCOPUS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논문의 일부만 SCI나 SCOPUS 홈페이지에 올리고 나머지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런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경우, SCIE에 색인된 논문을 출판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논문을 출판해야 합니다.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것이 판정되었는데, 해당 행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서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는 각 연구기관이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관련 자에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에 부실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본다면 연구부정행위 조사나 검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닐 수는 있지만 결코 권장되는 연구활동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 근거 자료

- 1) 이효빈 외, 2019, 부실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대책, NRF ISSUE REPORT 2019\_1호, 한국연구재단
- 2)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 제3장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



# 1

## 연구윤리 교육

###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실시

- 교육 안내** 기관의 역할 및 책임에 따라, 연구처에서는 원내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 및 특정 연구윤리 관련 비정기 교육을 진행하며, 상시 수강 가능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을 안내하고 있음.
- 교육 대상** 원내 소속 연구자(교원, 연구원, 학생 등) 및 직원
- 교육 내용**
  - 연구부정행위 기본개념과 사례
  - 연구데이터, 연구공동체, 출판윤리 등 최근 동향 및 사례
  - 부실학술활동 예방가이드라인 등 최근 이슈



# 2

## 예방가이드라인

### 연구윤리 관련 예방 가이드라인 배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법률 및 규정 안내**



<https://www.research.go.kr/page/463?menuNo=460>

The screenshot shows the 'Research Ethics Laws and Regulations' section of the Korean Research Foundation's website. It includes a search bar, a sidebar with links to general laws, institutional guidelines, and specific laws, and a main content area with sections on research ethics laws and regulations.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포털 가이드북 배포**



[https://www.research.go.kr/board/listBoard.do?tblid=88MTR\\_000000000169&pageIndex=1&sortField=searchWord&searchCnd=1](https://www.research.go.kr/board/listBoard.do?tblid=88MTR_000000000169&pageIndex=1&sortField=searchWord&searchCnd=1)

The screenshot shows the 'Research Ethics Information Portal Guidebook' section of the Korean Research Foundation's website. It features a sidebar with various research ethics topics and a main content area displaying a grid of guidebooks from 2021 to 2023.

## 의심 학술활동 대응 가이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AFE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운영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SAFE system.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검색' (Search), '데이터 관리' (Data Management), '검도요청' (Request for Review), '증자사항' (Change in Shareholders), and 'About'. Below the tabs is a search bar with placeholder text '학술지' (Journal) and '제작자, 저작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Enter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author or creator). A large search icon is to the right of the search bar.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dark background with a digital grid and network connections. It includes four main sections: 'SAFE 소개' (Introduction), '의심 학술지' (Suspicious Journal), '부실 학술행사' (Fraudulent Academic Events), and '데이터 공개' (Data Disclosure). Below these sections is a map of the world with colored regions representing different academic activity levels. A legend indicates the color coding: light blue for 0~10, medium blue for 11~20, dark blue for 21~30, and green for 31~40. To the right of the map, there is a sidebar titled '공지사항' (Notices) with three items: '23 2020.06.22 우수 학술행사 대상자 입니다(제시 안내)' (Excellent Academic Event Participants), '22 2020.06.22 [문관드 풀판포럼] MHP, Frontiers의 외벽 지대 학술지는 무... (Excellent Academic Event Participants)', and '18 2020.06.18 세미나(김재아, 한민기, 홍국) 학술지 등급 제로 안내' (Notice about the grade of academic journals).

3

# 논문 표절방지 프로그램

## 논문표절방지프로그램 운영

- 학술정보처에서는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 도입 및 운영으로 자가 검사를 통한 논문표절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돋고 있음.
  -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gist.ac.kr>) 하단에 주요 국외 논문 표절 방지 프로그램인 Turnitin과 iThenticate 이용 가능



## Turnitin



전 세계 120억 건의 웹페이지와 2,500만 건 이상의 학술 저널 Article 및 1996년부터 턴잇인(Turnitin)을 통해 제출한 60만 건의 Student Paper들과 실시간 비교하는 서비스로 Comparison Technology로 원문 1편당 15~20분을 소요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고 비교 대상과의 일치 정도를 % 기준으로 표시해줌.

The screenshot shows the Turnitin interface with the following details:

- File: EssayChatGPT\_flags\_1.docx
- Similarity: 27%
- Flags: 2
- AI Writing: 38%
- Overall Similarity: 27% (highlighted)
- Match Groups: 2 Integrity Flags
- Sources: 2 matches found with Turnitin's database
- Details:
  - Not Cited or Quoted: 27%
  - Missing Quotations: 0%
  - Missing Citation: 0%
  - Cited and Quoted: 0%
- Not Cited or Quoted: 2 matches from 3 sources
  - Internet: 14%
  - www.coursehero.com
  - 1 text block, 72 matched words

## iThenticate 2.0



AIP, ACM, Springer, Elsevier, IEEE, Nature, Publishing Group 등 전세계 주요 출판사 및 학회들과 제휴하여 Article 간 유사성 비교분석 서비스 제공.

The screenshot shows the iThenticate interface with the following details:

- File: The Goliath of the Sea
- Similarity: 34%
- Flags: 4 Exclusions
- Overall Similarity: 34% (highlighted)
- Match Groups: 3 matches found with Turnitin's database
- Sources: 3 matches from 3 sources
  - Internet: 34%
  - www.coursehero.com
  - 1 text block, 72 matched words
- Details:
  - Not Cited or Quoted: 34%
  - Missing Quotations: 0%
  - Missing Citation: 0%
  - Cited and Quoted: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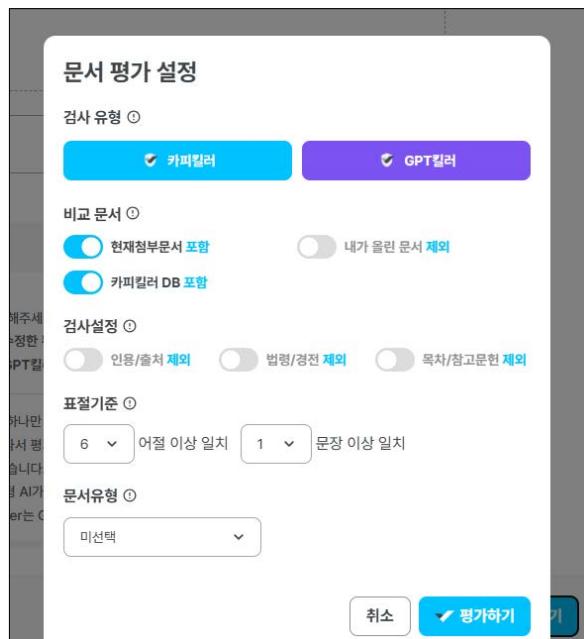
## Copy Killer / GPT Killer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사용 가능한 표절방지 프로그램.

Copy Killer : 업로드한 문서와 100억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 비교/분석하고 문장별 표절률, 표절 의심 영역을 직관적으로 표시.

GPT Killer : OpenAI GPT, Google Gemini (구 Bard), 네이버 CLOVA X, Microsoft Copilot 등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장을 탐지.



# 4

##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rndssos@gist.ac.kr](mailto:rndssos@gist.ac.kr)

# 연구부정행위 신고안내



**신고 대상** 연구진실성을 위반하는 연구부정행위

• 위조	• 부당한 증복게재
• 변조	•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표절	•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	•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보 방법**

-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해  
육아원칙에 의해 제보
- 실명 제보 원칙이나, 익명 제보 가능
- 익명 제보의 경우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음

• 062-715-2936  
• [rndssos@gist.ac.kr](mailto:rndssos@gist.ac.kr)

**제보시 필수 포함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부정행위의 제보 등)

- 부정행위의 내용
-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 자료
-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 제보자 소속, 이름 및 직급
- 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결과를 통보 받을 제보자 연락처

익명 제보의 경우 제보자의 소속, 이름, 직급, 연락처는 제외 가능

**검증 절차** 제보에 따른 조사 검증 절차



• 연구부정행위 제보

• 접수

• 조사  
예비조사·본조사 등

• 판정  
연구진실성위원회

• 조사결과 후속조치

**관련 법령**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거  
사업 참여 제한, 제재부과금 부과, 연구개발비 환수 등

**GIST**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연구처**



## 제4장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지침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 한국연구재단, 2011.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연구윤리사례집
- 한국연구재단, 2021. 국내·외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례집
- 한국연구재단, 2025.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 SAFE,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https://safe.accesson.kr>



# **연구윤리 위반사례집 +FAQ**

---

기 획 GIST연구원 연구처 연구지원팀

문 의 Tel. 062-715-2932 / Fax. 062-715-2939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23 광주과학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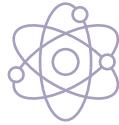
디자인 2bit studio

---





## 연구윤리 위반사례집 +FAQ



**GIST**